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설치〉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2호)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0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1. 윤영석의원안	1
2. 김태호의원안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윤영석의원안	1
2. 김태호의원안	2
III. 검토의견	4
1.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가. 개정안의 내용	4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기관 의견	6
2.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설치	7
가. 개정안의 내용	7
나.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	9
다. 검토의견	15
라. 관계기관 의견	18

I. 제안경위

1. 윤영석의원안(의안번호 제172호)

가. 제 안 자 : 윤영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5.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김태호의원안(의안번호 제230호)

가.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10.

다.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영석의원안(의안번호 제172호)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5만 5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30%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2,40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한 도시로 현재에도 기업체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증산·사송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구 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의 경우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km 이상으로서,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군(市·郡)지역 중 40km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양산시청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약 50분이 소요되며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직행 노선은 없고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됨.

이에 따라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까지 법원을 가야 하는 등 사법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6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한편,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민이 동일하게 편리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향유하게 하려 함 (안 제2조제3항).

2. 김태호의원안(의안번호 제230호)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4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하였고 그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도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km로, 자가용 이용 시 약 40분 혹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군(市·郡)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임에도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함을 고려하여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III. 검토의견

1.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운영석의원안 제2조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3년마다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조(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법원행정처는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3년마다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 여부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행정처가 이와 같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법원의 지역별 설치나 관할구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사법서비스 향유를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수의 법원이 이미 설치되어 전국 법원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소요 예산, 필요 인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설치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회 입법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법원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립된 결과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2.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설치 (윤영석·김태호의원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양 개정안은 이 중 [별표 2]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별표 1] 및 [별표 3]를 개정하여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울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별표 1] 및 [별표 5]를 개정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울산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즉, 현행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는 한편, 관할 지방법원을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소재지: 울산광역시)에서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양 개정안은 별표를 개정하는 방식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도하는 효과는 동일하나, 시행일(윤영석의원안: 2026년 3월 1일, 김태호의원안: 2025년 3월 1일)은 다르게 규정됨.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설치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폐지(삭제)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 조정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관할구역 규정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울산가정법원 관할구역 조정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관할구역 규정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폐지(삭제)

<폐지·신설되는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구분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폐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윤영석의원안 (2026. 3. 1.) 김태호의원안 (2025. 3. 1.)
신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은 모두 부산고등법원 관할임.

나.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¹⁾

1) 관할인구

- 양 개정안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관할구역: 양산시)을 폐지하고,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관할구역: 양산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관할구역에 따라 2023년 기준 울산지방법원 본원(울산지방법원은 지원 없음),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인구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인구는 35만 5,122명으로, 현재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145만 8,783명)의 약 24.3%에 해당함.

<개정안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인구>

	법원	관할구역	면적(km ²)	인구(명)
현재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1,062.1	1,458,783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시	880.7	1,183,485
변경 후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576.5	1,103,661(75.7%)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시	880.7	1,183,485
	양산지원	양산시	485.6	355,122(24.3%)

- 신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인구(35만 5,122명)는 전국 지원 중 24위 규모로, 현재 지방권 소재 지원의 평균 관할인구(37만 4,672명)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남.

1)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지원별 관할인구 비교>

(2023. 12. 31. 기준)

순위	지원	인구
1	성남지원	1,640,985
2	고양지원	1,572,660
3	안산지원	1,429,220
4	부천지원	1,266,140
5	안양지원	1,045,759
6	대구서부지원	1,026,178
7	부산서부지원	1,020,844
8	천안지원	1,001,755
9	부산동부지원	987,880
10	남양주지원	981,660
11	순천지원	825,612
12	평택지원	780,056
13	진주지원	566,242
14	김천지원	543,021
15	군산지원	530,016
16	포항지원	502,110
17	여주지원	461,748
18	마산지원	444,890
19	목포지원	425,440
20	원주지원	407,862
21	서산지원	407,097
22	통영지원	404,057
23	강릉지원	360,715

순위	지원	인구
24	양산지원	355,122
24	홍성지원	320,766
25	충주지원	298,961
26	안동지원	282,737
27	경주지원	247,489
28	상주지원	218,136
29	논산지원	217,938
30	정읍지원	204,557
31	밀양지원	159,167
32	제천지원	157,895
33	영월지원	150,895
34	해남지원	140,195
35	거창지원	138,195
36	속초지원	137,069
37	공주지원	132,272
38	남원지원	124,528
39	의성지원	97,093
40	영덕지원	96,385
41	영동지원	93,086
42	장흥지원	67,768
전국 지원 평균		521,835
수도권 소재 지원 평균		1,147,279
지방권 소재 지원 평균		374,672

2) 예상 사건 수

- 현재 울산지방법원 본원(관할구역: 울산광역시, 양산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 양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건은 신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에서 처리될 것임. 인구비율(신설 양산지원 관할인구는 기존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의 24.3%)에 따라 사건 수를 추정해 보면, 양산지원 사건 수는 약 2,792건으로 예상됨.

<신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사건 수 추정>

구 분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울산지방법원	434	4,223	493	6,343	11,493
울산지방법원 (분리 후)	329	3,197	373	4,802	8,701
양산지원(안)	105	1,026	120	1,541	2,792

- 신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연간 접수 사건 수(2,792건)는 전국 지원 중 24위 규모로, 현재 지방권 소재 지원의 평균 접수 사건 수(2,893건)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남.

<지원별 사건 수 비교>

(2023. 12. 31. 기준)

순위	지원	사건수	순위	지원	사건수
1	성남지원	12,653	24	양산지원	2,792
2	안산지원	11,020	24	강릉지원	2,649
3	고양지원	10,828	25	홍성지원	2,644
4	부천지원	10,797	26	경주지원	1,952
5	부산지법동부지원	8,357	27	안동지원	1,778
6	천안지원	7,958	28	논산지원	1,508
7	안양지원	7,318	29	정읍지원	1,441
8	부산지법서부지원	7,316	30	밀양지원	1,405
9	평택지원	7,268	31	상주지원	1,362
10	남양주지원	7,193	32	해남지원	1,331
11	대구지법서부지원	7,169	33	속초지원	1,254
12	순천지원	5,882	34	공주지원	1,189
13	진주지원	4,806	35	영월지원	1,103
14	군산지원	4,273	36	거창지원	1,046
15	여주지원	4,083	37	제천지원	913
16	목포지원	3,765	38	영덕지원	834
17	원주지원	3,630	39	남원지원	784
18	통영지원	3,611	40	의성지원	693
19	김천지원	3,560	41	영동지원	617
20	서산지원	3,491	42	장흥지원	567
21	포항지원	3,480	전국 지원 평균		4,036
22	마산지원	3,237	수도권 소재 지원 평균		8,895
23	충주지원	2,745	지방권 소재 지원 평균		2,893

3) 사법 접근성

- 현재 양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1심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함. 양산시청에서 울산지방법원까지의 거리는 48킬로미터, 소요시간은 자동차로 41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32분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양산시 주민들의 1심 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은 다소 낮은 편임.

<인구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의 사법접근성 비교>

구분	인구(명)	관할법원	각 시청 ↔ 관할법원		
			거리(km) ²⁾	시간	
				자동차	대중교통
양산시	355,122	울산지방법원	48	41분	1시간 32분
		창원지방법원	46	47분	2시간 8분 ³⁾
아산시	345,796	천안지원	16	31분	1시간16분
구미시	405,506	김천지원	34	32분	1시간20분
여주시	271,696	순천지원	32	42분	1시간29분
익산시	270,036	군산지원	25	31분	1시간12분

- 양산지원이 현재 양산시청 인근 부지에 설치된다고 전제하면, 양산지원 설치에 따른 양산시 주민들의 1심 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 변화는 다음과 같음.

원동면과 동면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지방법원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 각각 1시간과 42분이 소요되나, 양산지원이 설치되면, 각각 32분과 4분으로 단축됨. 다만, 서창동의 경우 현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지방법원까지 자동차로 27분, 대중교통으로 40분이

소요되나, 양산지원이 설치되면, 각각 29분과 1시간 15분으로 증가하여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양산시 각 거점지역에서의 사법접근성 비교>

출발지	인구	각 행정복지센터↔창원지법			각 행정복지센터↔울산지법			각 행정복지센터↔양산시청		
		거리 (km)	시간		거리 (km)	시간		거리 (km)	시간	
			자동차	대중교통		자동차	대중교통		자동차	대중교통
원동면	31,497명 (8.9%)	54	1시간6분	2시간14분	56	1시간	2시간38분	19	32분	1시간26분
동면	228,712명 (64.4%)	48	48분	2시간1분	40	42분	1시간43분	2.8	4분	11분
서창동	94,913명 (26.7%)	73	1시간9분	2시간18분	20	27분	40분	24	29분	1시간15분

4)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 및 사건 수

○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로 울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서 양산시가 제외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는 145만 8,783명에서 110만 3,661명으로 감소함.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이 설치되면, 울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는 18개 지방법원 중 10위에서 13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비율(신설 양산지원 관할인구는 기존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의 24.3%)에 근거하여 추정한 신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연간 사건 수는 2,792건임.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는 종전 1만 1,493에서 8,701건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이 설치되면, 울산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는 18개 지방법원 중 12위에서 13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울산지방법원 관할인구 및 사건 수 변화>

순위	법원	관할인구
1	수원지방법원	3,446,821
2	인천지방법원	2,997,410
3	서울북부지방법원	2,242,180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73,991
5	서울남부지방법원	1,993,766
6	대구지방법원	1,916,333
7	대전지방법원	1,878,834
8	광주지방법원	1,764,439
9	서울동부지방법원	1,726,248
10	울산지방법원(현재)	1,458,783
10	서울서부지방법원	1,349,849
11	부산지방법원	1,284,638
12	창원지방법원	1,183,485
13	울산지방법원(양산지원 제외시)	1,103,661
14	의정부지방법원	1,047,220
15	청주지방법원	1,043,527
16	전주지방법원	895,656
17	제주지방법원	675,252
18	춘천지방법원	429,818

순 위	법 원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1	서울중앙지방법원	6,638	55,102	1,228	9,773	72,741
2	인천지방법원	971	12,834	1,178	12,597	27,580
3	수원지방법원	1,554	12,422	955	10,408	25,339
4	서울남부지방법원	1,218	12,872	577	7,085	21,752
5	서울서부지방법원	832	14,266	405	4,527	20,030
6	광주지방법원	857	8,278	762	7,183	17,080
7	서울북부지방법원	530	8,153	555	6,829	16,067
8	서울동부지방법원	1,026	9,178	424	5,213	15,841
9	부산지방법원	722	7,436	745	6,724	15,627
10	대구지방법원	780	7,343	690	6,769	15,582
11	대전지방법원	742	7,672	635	6,472	15,521
12	울산지방법원(현재)	434	4,223	493	6,343	11,493
12	의정부지방법원	401	4,343	436	4,629	9,809
13	울산지방법원(양산지원 제외시)	329	3,197	373	4,802	8,701
14	청주지방법원	345	3,934	339	3,837	8,455
15	창원지방법원	398	3,741	360	3,945	8,444
16	전주지방법원	289	4,362	286	3,062	7,999
17	제주지방법원	304	3,107	366	3,346	7,123
18	춘천지방법원	172	1,218	167	1,555	3,112

다. 검토의견

- 경상남도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임. 양산시에 시법원이 있으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제1심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33조(시·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 개정안은 울산지방법원 관내에 설치된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창원지방법원 관내와 2025년 3월 1일 설치 예정인 창원가정법원 관내에 각각 양산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즉, 현행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는 한편, 관할 지방(가정)법원을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재 울산지방법원

관내에는 지원이 없으며, 창원지방법원 관내에는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등 5개 지원이 설치(2025년 3월 1일 설치 예정인 창원가정법원도 마찬가지)되어 있고, 양산지원이 설치되면 6개가 됨.

-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의 설치는 ① 양산지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양산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과 개선의 정도, ③ 울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나 사건 수에 미치는 영향, ④ 사법관할과 행정구역의 일치 필요성, ⑤ 지원 설치를 요청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⑥ 조직 신설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인구(35만 5,122명)와 예상 사건 수(2,792건)은 지방권 소재 지원의 평균 관할인구(37만 4,672명)와 사건 수(2,893건)에 비해 다소 작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한 편으로 보이며, 양산지원이 설치되면, 양산시 주민들의 1심 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사법관할과 행정구역이 경상남도로 일치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신설 양산지원의 위치에 따라 양산시의 일부 지역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을 이용할 때보다 사법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며,

양산시가 울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울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와 사건 수는 약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청사 신축 등 양산지원 신설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양 개정안에서 규정한 시행일(윤영석의원안 2026년 3월 1일, 김태호의원안 2025년 3월 1일)이 실현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라.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는 양산지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양산지원을 설치하여 관내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다만, 법원의 설치는 관할인구 수, 접수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 소요, 관련 지역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양산지원을 창원지방법원 산하로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산지원을 창원지방법원 산하로 신설할 경우, 합의부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소심 재판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되고, 창원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양산지원 설치의 효용성, 지원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개선 정도,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간 관할의 합리적 배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이 신설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1심 사건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일부 지역(서창동 일대)의 경우 사범접근성이 다소 악화되는 점, 양산지원 설치로 울산지방법원은 본원으로서의 위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양산시에 비해 규모가 큰 용인(관할인구 약 100만명), 김해(관할인구 약 53만명)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양산지원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및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늦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1